

2021 법인세 실무 (손상의 저) 수정내용

(작성자 : 손상의 세무사)

당초에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2021년 3월16일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이 당초 정부의 개정(안)과 다르게 결정되었으므로 교재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안내합니다.

<주요 수정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과세연도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2020년 과세연도에 한정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잔존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1. 수정전 교재 내용(당초의 정부안) : [교재 p953하4 - p954상11]

(2) 2020년12월31일 속하는 과세연도의 예외

1)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상기 (1)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조특법29의7⑥].

2)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적용특례

상기 1)의 사후관리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말한다)를 유지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조특법29의7⑦].

[주] 2021년1월7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하였고, 해당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부칙3].

2. 수정 후 내용 (2021.3.16. 공포된 내용)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소한 경우 : 사후관리 1년 유예

1) 조특법 제29조의7 제5항의 개정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특법 제29조의7 제2항[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후단[**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가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29의7⑤].

2) 개정 법률의 설명 :[조특법 제29조의7 제5항]

본래의 사후관리 규정은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되, 2020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2020년 사업연도에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2차 연도, 3차연도[중소기업·중견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후관리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2021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 세액공제 적용

1) 조특법 제29조의7 제6항의 개정내용

2020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사후관리 규정의 1년간 유예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고용증대세액공제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29의7⑥].(2021.03.16. 신설)

2) 개정 법률의 설명 :[조특법 제29조의7 제6항]

사후관리규정을 1년간 적용유예 하였으므로 2021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 공제 규정도 1년이 지난 2021년12월31일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 유예하였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2022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사후관리 규정 적용

2020년 과세연도에 사후관리 적용유예를 적용받고 2021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아니하여 1년간 유예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본래의 사후관리 규정[조특법 제29조의7 제2항]을 적용한다[조특법29의7⑦].(2021.03.16 신설)